

審 查 報 告 書

1. 審 查 經 過

- 가. 提出日字 : 1999. 7. 23
- 나. 提出者 : 瑞 山 市 長
- 다. 回附日字 : 1999. 7. 23
- 라. 上程日字 : 1998. 7. 30

2. 提 案 說 明 要 旨 (提 案 說 明 : 建 設 課 長 尹 炳 珪)

가. 提 案 理 由

- '96.6.29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95.12.29 농지개량조합법이 제정되어 농지개량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충청남도의 조례로 제정토록 규정되었기 폐지하려는 것임.

나. 主 要 骨 子

- 서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의 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의 폐지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

- 본 조례는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제56조의8 제2항2호의 규정에 의거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유지관리하지 않는 농지개량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토록하였으나 모법이 폐지되고 농지개량조합법이 제정되면서 동법 제88조제2항에 의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바 본시에서 정한 본조례는 폐지하여도 가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농지개량조합법 제88조 제2항에서 “농지개량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로 하였으나, 도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아 제정될때까지는 농지개량계의 시설의 설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감독등 다소의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관련부서의 대처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질의) 본 조례가 폐지될 경우 시장의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 시설관리 권한에 대한 책임소재가 없어져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불이익이 초래될 것인바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 답변) 모법인 농지개량조합법에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관리구역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반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본 조례가 폐지되어도 자체적으로 충실한 관리는 물론 도 조례의 제정에 따라 새로운 관리방안을 강구하겠음.

5. 討論 및 少數意見 : 없었음

6. 審査結果 : 원안대로 가결

의안번호	제 12 호
의결년월일	1999. . . (제 회)

서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1999. 7. 22.

서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52
----------	----

제출년월일 : 1999. 7. 23 .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폐지이유

- 1996. 6.29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1995.12.29 농지개량조하법이 제정되어 농지개량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충청남도의 조례로 제정토록 규정되었기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서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의 폐지

3. 참고사항

- 농지개량조합법 제88조제2항